

단기교육과정 인증 규정

제정 2020. 2. 28.

제1장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(명칭변경 2022. 2. 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편성, 운영 및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 2. 8.)

제2조(정의 및 종류) ①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란 창의적 융·복합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말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②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은 미래융합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과 실무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, 학생맞춤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제3조(교육과정 편성) ①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편성은 융합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② 신설·폐지·명칭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사항의 처리는 융합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제4조(최소이수학점) ① 미래융합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② 실무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, 학생맞춤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제5조(신청 및 이수) ① 2020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재학생은 미래융합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인 AI·SW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생략한다. 단,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의 특성 및 AI·SW 마이크로디그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<표-1>에 해당하는 학과 재학생은 필수 이수대상에서 제외한다.(개정 2022. 2. 8., 2023. 6. 15.)

② 그외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2학년 이상인 자로 신청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부(과)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제6조(이수사정) ①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는 각 단과대학 별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②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졸업 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을 기재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(개정 2022. 2. 8.)

제7조(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)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신청자 중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미 취득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전공과목의 이수구분을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교양과목은 기존 이수구분을 따른다. 단, AI·SW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이수예정자는 제외한다.

제2장 모듈형 교육과정

제8조(목적) 이 규정은 모듈형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명칭 및 적용범위) ①모듈형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다차원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블록 조합 완성형 교육을 말한다.

②모듈형 교육과정은 CanDo역량 개발, 자격증 취득, 전문능력 개발, 학위취득 등으로 구분한다.

제10조(교육과정) ①모듈형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는 마이크로 모듈을 조합하여 운영한다.

②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은 교양교육과정, 전공교육과정, 비교과교육과정 간 다양한 융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모듈형 교육과정은 융합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

④ 모듈형 교육과정의 신설·폐지·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사항은 융합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의결 한다.

제11조(최소이수학점) ①모듈형 교육과정에서 교과 연계형(교양, 전공, 융합 교육 등)의 경우 최소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모듈형 교육과정의 비교과 연계형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2조(신청) 모듈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부(과)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이수사정) ①모듈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별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는 단과대학별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②모듈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또는 인증서를 수여한다.

③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제14조(학점의 대체 및 이수인정) 모듈형 교육과정 신청자 중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의 이수 구분을 일반선택 취득학점으로 분류하고, 교양과목은 기존 이수 구분을 따른다.

부 칙(2020. 2. 2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6. 15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표-1〉(신설 2023. 6. 15)

AI·SW 마이크로디그리 필수 이수제외 학과	
단과대학	학부(과)
인문사회대학	사회복지학부 유아교육과
생명보건대학	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
AI융합대학	컴퓨터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학과 빅데이터시학부 (빅데이터경영공학부, 빅데이터시학과 포함) 로봇공학과
미래융합대학	사회복지상담학과 안전공학과 기계ICT공학과